

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(담당자 연락처 // 전화 044-201-6358, 팩스 044-201-6362, 이메일 c jy8518@korea.kr)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e.go.kr>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-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((우) 301-03)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708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6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와이플러스건설(주)(하미영)

나. 전화번호 : 031-351-8754

2. 명칭 : 날개형 보강재가 형성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 교차포설하여 접합부의 일체성을 확보한 3중 복합방수공법(Y-Plus System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건축 / 방수 / 복합방수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재와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(Polyethylene)을 가교 발포하여 유연성을 부여한 발포폴리에틸렌 시트 방수재 “플러스 시트재”를 1차, 2차 포설하는 과정에서 시트와 일체화 되어있는 날개형 보강 부직포를 통한 접합부형성 및 상하부 시트 간 접합부를 교차 형성함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켰으며, 또한,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는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“플러스 도막재”는 부직포 층으로 합지되어 있는 플러스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기 때문에 도막, 시트 간 일체화된 3중의 방수구조를 형성하여, 보다 튼튼하고 수밀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. 이를 통해 장기적 방수 안정성능을 겸한 기술로 건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, 수밀성능 증진 등 이를 구현한 3중 복합방수기술 ”와이플러스 시스템”에 관한 것이다.

<범위>

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2중으로 포설 하며, 시트 포설 시 하부 시트와 상부 시트의 접합부가 동일 직선상에 서로 일치되지 않도록 교차 시공하고, 시트상부에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에 따라 3중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-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.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720호

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수량,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·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호, 2018. 6. 0. 공포, 2018. 6. 0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
- 전자우편 : ajajulie@korea.kr, parkysun@molit.go.kr
- 팩스 : 044-201-5516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(전화 044-201-3214~5, 팩스 044-201-55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